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9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권칠승·송옥주·민병덕

김종민 · 임미애 · 강경숙

문금주 • 임호선 • 이병진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하다.
 -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

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류 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 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 나 기각할 수 있다.

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 행일 전에 제1115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유류분 상실 선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
	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
	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
	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u>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u>
	대하게 위반한 경우
	<u>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u>
	<u>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u>
	<u>양의무</u>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
	<u>다)</u>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
	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u>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u>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 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 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 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 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 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 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3 항의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 유 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 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할 수 있다.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제

1008條,第1010條의 規定은 遺窗分에이를 準用한다.

1008조--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준용한다.